

學校圖書館 關係法規에 관한 考察

金 坪 勳
光州教育大學教授

1. 序 言

한 나라의 文化程度를 알려면 그 나라의 圖書館을 보는 것이 捷徑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事實이라면 한 나라의 教育程度를 살피려 할 때에는 그 나라의 學校圖書館의 發展程度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다는 말도 成立될 것이다. 教育理念 및 方法이 進步된 國家일수록 學校圖書館의 發達도 顯著하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¹⁾

우리나라는 解放 후 教育面에서 顯著한 發展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發展이 量的 인 成長에 치우쳐 量과 質의 調和 있는 發展을 이루지 못한 畸形的 現象을 보였다. 이에 참다운 教育成長을 이루하려면 質的인 成長과 施設面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껴 教育界는 이에 대한 實現方法을 찾으려고 努力했었다.

學校圖書館은 이러한 摸索의 結果로서 이루어진 것 중의 하나로서 이제는 學校施設 중 없어서는 안 될 不可缺한 機關으로 位置하게 되었다. 그러나 學校圖書館은 教育의 質的 向上에 寄與할 수 있는 現實的 與件이 造成되어 있지 않았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이 原因은 결코 學校圖書館 關係者의 努力 不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의 圖書館 行政에 관한 政策的인 貧困性에基因된 面이 더 큰 것이다.²⁾

그러므로 學校圖書館 關係法規의 人的 物的 機能的 要素에 관한 法規力은 教育과 圖書館의 目標設定의 共有領域을 最大로 擴大할 수 있는 方向으로 誘導하여야 한다.

本稿에서는 學校圖書館 關係法規의 이러한 誘導作用力を 圖書館의 三大 構成要素³⁾ 즉 資料, 職員, 施設의 각 領域別로 區分하여 外國의 學校圖書館 關係法規와의 比較分析에서 考察하고 그 問題點을 摘出해 보았다.

1) 張一世, 學校圖書館 運營指針, 서울, 新書閣, 1964. p.11.

2) 玄圭燮, 圖書館法과 同施行令의 定向點, 五輪月報, Vol.6. No.7, 1965. p.12.

3) 教大圖書館 研究會 編, 學校圖書館, 서울, 學文社, 1969. p.29.

이 論文은 法律學의 檢討解釋이 아닌 圖書館學의 觀點에서 考察하였으며 大學 圖書館은 性格上 여기에서는 除外하였음을 밝힌다.

2. 圖書館法規의 背景

1) 學校圖書館 設置의 必要性

教育이란 社會文化의 存續과 그 發展의 要求에서 生成한 社會機能의 一部라고 解釋할 수 있다. 이 社會의 要求를 어떻게 實現시키느냐에 따라 教育의 方法論이 成立된다. 過去에는 一定한 社會生活의 樣式이나 文化的 水準을 다음 世代에 傳達하는 手段으로서 教育이 存在했고, 學科目的 注入式 教育이나 既成觀念을 토대로 한 成人의 行動水準에의 強制 등이 教育에 直接 目的視되어 教科書와 教師만이 教育活動의 中心이었다.

그러나 民主的 人間觀의 發達을 통하여 人間活動에 관한 思考와 行動이 分化發達함에 따라 人間形成의 過程에 變貌를 일으키게 되어 教育의 方法도 점차 變化를 가져 왔다. 오늘날 教師는 自己自身과 教科書와 그리고 教室 내에서의 學習의 制限性을 理解하고 學生들에게 보다 廣範圍한 知識의 源泉에 接近하고자 하는 動機를 誘發시키며 거기에 올바로 接近할 수 있는 方法과 能力を 習得시켜 學生自身의 生活經驗을 통하여 바람직한 人間形成이 이루어 지도록 指導하고 있다.

學校圖書館은 實로 이와 같은 時代의 要求에 立脚한 必然의인 所產인 것이다. 여기에 證言을 들어 본다.

John Dewey는 “圖書館의 知的 資料와 教授·學習現場이 相互有機的인 關係에 놓여질 때 비로소 真正한 教育의 生活化를 期할 수 있다⁴⁾”고 하였다.

金鍾喆 教授는 “敎育方法 改善에 있어서 學校圖書館 活用을 생각할 때, 보다 豐富한 學習資料와 參考資料를 提供해 주고, 自律的 學習의 習性과 氣風을 涵養하는 데 學校圖書館은 獨特한 役割을 하고 있다”⁵⁾고 指摘하였다.

美國司書教師協會에서는 “오늘날 知識의 分量이 너무 방대하여져서 教室에서 아무리 優秀한 授業을 할지라도 이를 다 다루어 갈 수는 없게 되었다. 學校圖書館을 통하여 이러한 制限된 教室授業의 範圍는 모든 學問의 領域과 創造的 表現形式에 있어서 無限히 擴大될 수 있는 것이다”⁶⁾고 強調하였다.

4) J. Dewey, *The School and Society*, Rev.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3. pp.71~72.

5) 金鍾喆, 學校圖書館과敎育方法의改善, 朝鮮月報, Vol.5, No.3, 1964. p.18.

6) A.A.S.L.,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海外資料委員會(譯)

“文化의 發達이 日進日步 그 速度를 가하고 있으므로 過去와는 달리 今日의 文化社會의 成員에게 要求되는 經驗의 質은 極히 高度化하여 반드시 한사람 또는 몇사람의 接觸할 수 있는 教師에게만 배울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文化的 源泉에 直接 파고들 것이 要求되고 있다.”⁷⁾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代教育은 學習資料와 經驗資料가 要求되고 있다. 이에 學校圖書館은 學習資料의 資源인 동시에 學生들의 經驗을 社會文化의 要求에 向하여 넓고 깊게 補填하는 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에 圖書館이 學校에 性要함은 極히 明確한 論理이다.

2) 圖書館法의 性格

近代圖書館은 社會的 教育的 文化的 施設로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社會的 教育的 位置는 점점 確立되고 있다. 이와 같이 圖書館은 市民生活의 中心이 되고 또 學校教育의 中樞的 役割을 하기 때문에 國家에서는 法制化하여 國家行政의 하나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⁸⁾

圖書館法은 圖書館의 設置와 運營에 대해 어떠한 規定을 定해야 하며 圖書館員의 身分을 어떻게 保障하면 되는가 등을 規制한 것인데, 그 內容은 圖書館奉仕活動의 最大效果를 保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그것은 圖書館奉仕의 究極의 目標는 Communication이 發達한 現代社會에 相應하도록 圖書館資料를 利用者에 대하여 迅速히 提供하는데 있기 때문이다.⁹⁾

우리나라 「圖書館法」은 1963年 10月 28日, 法律 第1424號로서 公布되었는데 同法은 4章29條 附則 2個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法의 性格은 圖書館事業에 관한 綜合의 基本法이라 보겠다. 즉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¹⁰⁾을 包含한 綜合法으로 되어 特定圖書館에 限하여 法의 目的을 規定한 것이 아니다. 外國(歐美法)은 거의 「圖書館法」하면 公共圖書館에 관한 것으로 限定하고 別個로 學校圖書館 등 각기 獨立되어 있으나 우리나라は 大陸法系를 따르고 있는 關係로 한데 묶는 綜合法으로서의 圖書館法을 制定하였고, 具體의 細則은 別途 闕令으로서 「圖書館法施行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이 行使令은 1965年 3月 26日 大統領令 第2086號로서 公布되었다.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65) pp.27~28.

7) 日本圖書館教育研究會編, 學校圖書館資料의 選擇, 東京, 學藝圖書, 1965. p.17.

8)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實務便覽, 서울, 同協會, 1966. p.62.

9) 李喆珪,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p.245.

10) 圖書館法 第3條(圖書館의 種類)에는 設立目的에 따라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으로 區分하여 學校圖書館에는 國民, 中, 高等學校 圖書館에 大學圖書館을 包含시키고 있음.

現行 圖書館法은 綜合的으로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圖書館에 관한 것은 圖書館法 하나로써 總括的으로 把握할 수 있고 體系를 세워서 全部 理解할 수 있다는 利點도 있지만 特定圖書館에 관한 事項을 具體的으로 表現하는 데는 未備한 點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學校圖書館에 관한 事項이 法이 目的하는 바를 規定하는데 不足한 點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가 學校圖書館의 物의 基準(施設 資料)을 法施行 令에서 具體的으로 規定하지 못하고 「學校施設, 設備基準令」과 「學校校具設備基準令」에 包含시키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理由는 있겠으나 이 令에도 學校圖書館 施設의 種類를 대충 明示하는 程度로 그쳤고, 어느 部分은 數量的인 規定이 있다 하더라도 不合理한 點이 있음을 볼 수 있다.

圖書館의 設置와 運營이 發展的으로 이루어질려면 圖書館法規에 準據하는 바 크기 때문에 圖書館 法規에 關心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 圖書館法規의 性格으로 보아 크게 期待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3. 學校圖書館法規와 問題點

1) 學校圖書館 設置와 運營에 관한 事項

우리 나라 圖書館法에는 學校圖書館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第3條(圖書館의 種類) 3項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¹¹⁾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教員의 學習, 教養, 調査, 研究, 및 텍스트에 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

이 條文은 從來의 學校圖書館에 대한 一般的인 認識에서 벗어나 새로운 學校圖書館의 明確한 定義로, 學校圖書館의 目的까지 表現되고 있는 點에서 그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學校教育課程 展開에 寄與한다」는 말이 삽입되어 學校圖書館의 目的을 더욱 뚜렷하게 強調되었으면 한다. 그것은 學校圖書館 設置의 目的中 教育課程 展開에 寄與하는 比重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日本學校圖書館法¹²⁾에는 “學校圖書館이란 小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서 圖書, 視聽覺教育의 資料, 기타 學校教育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이를 兒童 또는 生徒 및 教員의 利用에 供함으로서 學校 教育課程의 展開에 寄與함과 同時に 兒童 또는 生徒의健全한 教養

11) 圖書館法에서는 圖書館資料를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必要한 資料라고 訂명.

12) 1953年 8月 8日, 法律 185號, 第2條(定義)

을 育成하는 目的으로 設立된 學校의 設備를 말한다”고 表現하여 教育課程 展開에 寄與한다고 밝히고 있다.

學校圖書館의 設置에 관한 法的根據를 보면 圖書館法 第25條(設置) 1項에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圖書室 또는 圖書館을……두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또한 「學校施設 設備基準令」¹³⁾에는 第5條에 “① 校舍는 學習과 保健衛生에 適合한 것 으로서 이에는 적어도 다음의 施設을 두어야 한다.

1~5 (省略)

6. 도서실

7~9 (省略)”

이것이 學校圖書館 設置에 관한 法的 規定으로 되어 있다. 이는 學校圖書館 設置는 단순한 勸獎規定이 아니고 義務規定으로 되어 있어 모든 學校에는 마땅히 圖書館(室)을 義務的으로 設置하게 되었다는 데 큰 意義를 찾을 수 있다. 한편 學校圖書館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살펴 보면 2個 條文만이 關係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圖書館法 第9條 2項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에 規定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이는 學校圖書館 運營에 있어서 監督廳의 所在를 밝힌 것이고, 同法 第27條 “學校圖書館은 그 目的達成에 支障이 없는 限 公衆의 利用에 提供할 수 있다.” 이 條文은 學校圖書館 運營에 있어서 一般人의 利用에 奉仕할 수 있다는 任意規定이다.

法第9條(監督廳)는 學校圖書館을 運營하는데 指導監督을 위해서 應當 있어야 할 條項이라고 본다. 그런데 監督廳의 指導監督 뿐만 아니라 學校圖書館의 바람직한 運營을 위한 設置者와 國家의 任務, 또한 支援策이 具體的으로 明示되어야 圖書館法이 지니는 目的 즉,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的 發展에 寄與……”¹⁴⁾ 하는데 그 効用性이 提高되리라고 보아진다.

日本의 경우 「學校圖書館法」에 設置者와 國家의 任務, 또한 經費問題까지도 規定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法第6條(設置者의 任務) “學校設置자는 이 法의 目的을 充分히 達成할 수 있도록 設置한 學校圖書館을 整備하고 그 充實을 圖謀하는데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된다.”

法第7條(國家의 任務) “國家는 學校圖書館을 整備하고 그 充實을 圖謀하기 위

13) 1969年 12月 4日, 大統領令 第4398號

14) 圖書館法 第1條(目的)

하여 다음 각項의 實施에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學校圖書館의 整備와 充實 또한 司書教師의 養成에 관한 綜合的 計劃을 樹立하는 일. ② 學校圖書館(國立學校의 學校圖書館을 除外)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한 專門的 技術的인 指導와 권고를 하는 일. ③ 前項 외에 學校圖書館의 整備 및 充實을 期하기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를 講究하는 일.”

法第13條(國家의 負擔) “國家는 地方公共團體가 設置하는 高等學校(맹아, 농아, 양호학교의 고등부를 포함)의 學校圖書館의 設備 또는 圖書가 政府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未達되어 이것을 當該 基準까지 到達시키고자 할 때는 이에 所要되는 經費의 2分의 1을 負擔한다”고 規定하여 經費問題까지도 明示하고 있다.

i) 圖書館經費는 學校圖書館의 組織과 運營에 絶對的 影響을 주는 要素로서 圖書館奉仕의 活力劑가 되기 때문에 매우 重要한 事項이다. 現在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活動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原因은 거의 經費問題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ii) 經費問題에 관해서 自由中國「中國圖書館基準令」¹⁵⁾에는 “學校圖書館 經費의 財源은 學生이 納入하는 圖書費를 為主로 하며 그 納入金은 全部 圖書館資料의 購入費로 使用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學校經常費中 每年 固定的으로 豫算을 策定하여 基本參考圖書를 購入 增置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美國의 學校圖書館基準에서 經費規定¹⁶⁾에 관한 重要한 項目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年間 必要經費의 基準은 學校圖書館이 機能的인 資料를 維持하며 教師 및 學生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하는데 必要한 全額을 권고한다.

(2) 印刷된 資料 購入豫算

a) 學生數 200~249人の 學校……1,000~1,500달러 이상

學生數 250人이상의 學校……學生 1人當 4~6달러 이상(1人當 4달러의 最低額은 學生 1人當 年間 1卷의 增加를 意味한다.)

b) 百科事典, 大辭典, 雜誌, 新聞 등은 特別費로 購入

(3) 教職員을 위한 專門資料 購入豫算 : 教職員用 資料購入을 위한 年間經費의 最低額은 教職員의 要求와 人員數 및 地域社會에서 活用할 수 있는 專門資料의 有無에 따라 200~800달러, 이는 學校圖書館資料 購入費 이외로 策定한다.

(4) 補助資料(補助教科書 教室用參考資料) 購入에 必要한 豫算을 別途로 策定.

15) 千惠鳳譯, 中國圖書館基準, 學校圖書館基準(12. 經費), 도협월보, Vol.9. No.8, 1968. p.15,

16) A.A.S.L.,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前揭書, pp.110~112,

(5) 用品 및 備品購入費는 學校의 必要에 따라 充分한 豫算確保.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外國의 경우는 學校圖書館 運營을 위한 經費事項도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한 學校圖書館 運營의 重要事項¹⁷⁾을 規定하여 運營指針으로 提示하고 있다.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設置 運營을 보다 發展的으로 誘導하기 위해서는 學校圖書館 設置者 및 政府의 支援事項을 規定하여 이는 強力한 政策事項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이 支援項目은 經費問題가 重要核心이 될 것이다.

다음은 監督廳의 指導體制가 系統性 있게 一律化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學校圖書館의 指導監督은 公·私立의 學校 모두 서울特別市, 釜山市, 道의 教育委員會 畏는 市·郡教育長의 指導監督을 받게 되어 있다.

먼저 서울特別市, 釜山市, 道의 教育委員會의 職制에서 圖書館 事務分掌을 보면 學務局初等教育課의 分掌事務에 “시청각교육 및 공작, 학급 문고의 지도”¹⁸⁾라는 事項이 있고, 또 서울特別市는 學務局社會教育課, 釜山市와 道의 教育委員會(濟州道는 除外)는 學務局社會體育課에 “도서관 운영의 지도 감독”¹⁹⁾이란 分掌事項이 있다. 職制上으로 初等教育課에서는 「學級文庫의 指導」만이라도 맡고 있으나 中等教育課의 所管事務에는 그것 마저도 包含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學校文庫의 指導를 除外한 圖書館行政 全般을 서울特別市의 社會教育課(課長은 書記官)와 釜山市 및 道의 教育委員會는 社會體育課(課長은 行政事務官)가 主管하겠금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學校圖書館行政을 非教育專門家에게 맡기고 있어 專門的 管理의 原理에 違背될 뿐더러 不合理한 點이기도 하다. 그런데 實際에 있어서는 社會教育課, 社會體育課의 指導監督은 公共圖書館만 管掌하고 있고 學校圖書館에는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學校圖書館을 위한 行政行爲로서는 學校圖書館 實態調查, 讀書週間行事 등에 관한 公文移牒, 示達 정도이다.²⁰⁾

다음은 市·郡 教育長 下部組織規則(準則)에서 圖書館分掌業務 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第5條(學務課) 學務課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分掌한다.

①~⑥ (省略) ⑦ 學級文庫에 관한 事項

17) 美國: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1960…… 많은 項目에 걸쳐 있음.

日本: 學校圖書館法 第4條 1~5項에 걸쳐 學校圖書館의 運營에 관한 事項임.

自由中國: 中國圖書館基準의 學校圖書館 基準分野 13~20項이 經營上의 重要事項임

18) 서울特別市, 釜山市, 道의 教育委員會職制(1972. 12. 30. 大統領令 第6439號) 第7條3項, 第11條3項

19) 上揭職制 第7條5項, 第11 5項

20) 金斗弘, 學校圖書行政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도입월보, Vol.11. No.2, 1970. p.38.

⑧～⑯ (省略)

第6條(管理課)

①～⑬ (省略) ⑭ 青少年職業學校, 私設講習所, 圖書館의 設立·廢止와 監督에
관한 事項 ⑮～㉑ (省略)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務課의 學級文庫에 관한 事項 뿐이며 市道의 教育委員會와 같은 實情이다.

文教部職制²¹⁾에서는 圖書館關係 分掌事務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다. 文教部職制 第13條3項(社會教育局 社會教育課의 分掌事項)6號에 “各種 圖書館에 대한 指導監督”이라는 明示 뿐이다. 따라서 圖書館行政의 主務局은 社會教育局이며 主務課는 社會教育課이다. 그런데 實際 行政行爲에 있어서는 公共圖書館의 指導監督을 擔當할 뿐, 學校圖書館에는 손을 뜯고 있다. 文教部獎學官室은 學校圖書館行政에 多少의 影響力이 있기는 하나 分掌事務에는 明示가 없다. 그리고 獎學官室은 Line部署가 아니고 Staff部署이므로 學校圖書館의 行政的인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²²⁾ 그런데 文教部高等教育局 大學學務課의 分掌事務에는 “大學圖書館의 運營監督”²³⁾이라는 事項이 있다. 大學圖書館은 이렇게 明確히 規定하면서 國民, 中, 高等學校 圖書館에 대한 明示가 없음은 理解하기 어렵다. 따라서 各種 圖書館行政을 맡은 部署가 社會教育課이기 때문에 學校圖書館行政 역시 여기서 管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圖書館의 指導監督은 職制上으로 보아 그 組織이 系統性 있게 明確히 體制化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의 行政分掌 事項을 明確히 規定하여 學校圖書館 獎學體系의 確立과 그 實効性을 겸을 수 있는 措置가 있어야 하겠다.

圖書館法 第27條(一般의 利用에의 提供)에 대해서는 學校圖書館의 奉仕對象을 學生 教員에서 보다 擴大하여 地域社會 住民들에게 利用을 開放하며 地域社會開發에 적극 參與한다는 現代 圖書館의 機能面에서 보아 滿足할 規定이라고 解釋된다. 그런데 現在 大部分의 學校圖書館은 資料, 施設 및 與件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實効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地域社會 住民의 利用에 供할 수 있는 與件造成이 앞서야 할 問題라고 생각된다.

21) 1973年 3月 9日. 大統領令 第6531號

22) 金斗弘, 前揭書 p:38.

23) 文教部職制 第11地4項 6號.

24) 教育大隊圖書館學研究會編, 圖書館概論, 서울, 一潮閣, 1969. p.51.

2) 學校圖書館의 資料에 관한 事項

學校圖書館 資料라는 用語는 學校에 있어서 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教育 Media 또는 이들 資料群을 總稱하여 말하는 것으로 抽象的 經驗資料에서 視聽覺資料와 같은 具象的 經驗資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資料가 다 여기에 包含된다. 그리고 이들 資料는 學校教育과 그 圖書館의 機能 속에서 特定한 使命을 지니고 있는 精選된 資料로서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資料와는 다른 性格과 機能을 가지고 있다.²⁴⁾ 따라서 學校圖書館이 그 學校의 讀書센터, 情報센터의 구실을 하려면 그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多種多樣한 資料를 量的으로 充分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質的으로는 學校教育의 目的達成에 寄與할 수 있고 學生들의 發達段階에 適合하여 그들의 學習과 人格形成에 도움이 되는 教育的 價值가 있는 資料를 備置하여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學校圖書館 關係法規面에서는 어떻게 規定하여 學校圖書館 資料의 備置와 擴充을 促進시키고 있는가를 考察해 본다.

學校圖書館 資料에 관한 規定을 찾아 보면 圖書館法과 法施行令에서는 法第2條에 “……圖書, 記錄,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必要한 資料(이하 “圖書館資料”라 한다)……”라 하는 明示가 있다. 이는 圖書館資料에는 圖書만이 아니라 圖書 이외의 資料 등 圖書館의 目的 遂行에 必要한 大量의 資料가 包含된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利用者들에 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資料의 量的 規定은 法第25條2項에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 또 法施行令 第2條2項에는 “法第25條2項의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各級 學校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고 하여 資料를 包含한 모든 施設의 量的 規定은 別途規定하는 各級 學校의 施設基準令에 包含시키려는 意圖이다. 그래서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學校圖書館施設의 基準이 包含되고 있는데 즉 “圖書室의 閱覽座席 및 備置圖書의 數의 基準은 別表 3과 같이 한다”²⁵⁾고 定하고 別表3의 備置圖書數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별표 3>

도서실의 비치도서수

(신설 73.9.14 대령 6854)

구별	도서수
국민학교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학교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25)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第5條6項

위의 规定이 學校圖書館資料基準에 관한 唯一한 法的 根據로 되어 있다. 그런데 學校圖書館의 設立目的, 奉仕機能 또는 學校圖書館資料의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이 程度의 水準規定이 學校圖書館의 資料備置에 얼마나 實効性을 걸을 수 있으며 資料 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지 疑問을 갖게 한다. 더구나 圖書館에서 圖書 이외의 資料의 價值가 增大되고 있는 이 때에 圖書 이외의 資料에 대해서는 아무런 规定이 없으니 하나의 問題點으로 指摘할 수 있다.

資料關係 规定에 관해서 外國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美國의 基準

인쇄된 자료	<p>(1) 도 서</p> <p>학생수 200~299人의 학교는 최저수 6,000~10,000책 학생수 1,000人 이상의 학교..... 학생 1人당 10책 이상</p> <p>(2) 잡 지(최저 필요총수)</p> <p>a) 일반잡지</p> <p>유치원부터 6年生까지 있는 학교 25종 유치원부터 8年生까지 있는 학교 50종 중학교 70종 고등학교 120종</p> <p>b) 도서관학 및 교재관계잡지 5종</p> <p>(3) 신문은 3~6종</p> <p>(4) 광범위의 주제에 걸쳐 다종다양한 팜플렛</p>
교사를 위한 전문자료	<p>(1) 도 서</p> <p>교사의 요구, 교사의 수, 지역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자료의 유무에 따라..... 최저 200~1,000책</p> <p>(2) 잡지는 최소한 25~50종</p> <p>(3) 필요한 기타 자료</p>
보조자료 및 시청각 자료	(생 랙)

資料 : A.A.S.L.,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1960

(2) 日本의 基準

장 서 기 준

학 生 수	소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50人이하	300 책		
51~100人	300+3×(학생수-50)		
100 人이하		600 책	700 책

101-300 人	$450 + 2.5 \times (\text{학생수} - 100)$	$600 + 4 \times (\text{학생수} - 100)$	
101-600 人			$700 + 5 \times (\text{학생수} - 100)$
300-600 人	$950 + 2 \times (\text{학생수} - 300)$	$1,400 + 3.5 \times (\text{학생수} - 300)$	
601-900 人	$1,550 + 1.5 \times (\text{학생수} - 600)$	$2,450 + 3 \times (\text{학생수} - 600)$	$3,200 + 4 \times (\text{학생수} - 600)$
901-1,500 人	$2,000 + 1 \times (\text{학생수} - 900)$	$3,350 + 2 \times (\text{학생수} - 900)$	$4,400 + 3 \times (\text{학생수} - 900)$
1,501 人 이 상	$2,600 + 0.5 \times (\text{학생수} - 1,500)$	$4,450 + 1 \times (\text{학생수} - 1,500)$	$6,200 + 1.5 \times (\text{학생수} - 1,500)$

資料 : 일본학교도서관법 시행령에 있어서 규정된 기준

잡 지 기 준

학 生 수	소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900 人 이 하	약 10 종	약 15 종	약 20 종
900 人 이 상	약 15 종	약 20 종	약 30 종

資料 : 일본학교도서관기준

(文部大臣자문기관인 학교도서관협의회가 학교도서관의 진흥책으로 만든 것임)

(3) 自由中國의 基準²⁶⁾

① 圖書館藏書의 構成은 基本參考圖書를 為主로 하여야 한다. 이에 包括하는 資料는 字典, 辭典, 百科事典, 年鑑, 便覽, 案內, 書目, 索引, 地圖 등의 Tools과 知識 각 分野의 重要著作 등등이다. 이 圖書館의 最低 購入備置量은 學生數가 1千人 이하의 中學校는 500種, 高等學校은 700種이어야 한다. 1千人 이상의 中學校는 700種, 高等學校는 1,000種을 備置하여야 한다.

② 圖書館藏書의 總冊數는 最低限 校每 1人에게 5冊을 分配할 수 있을 程度가 되어야 한다. 每年的 增加率은 2~4人마다 新刊書 1冊이 增置되어야 한다.

③~④ (省略)

⑤ 각 圖書館이 注文 備置하여야 할 雜誌의 最低 種數는 學生數 1千人 이하인 경우 中學校는 15種, 高等學校는 20種이며, 1千人 이상인 경우 中學校는 20種, 高等學校는 30種이어야 한다.

⑥ (省略)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은 日本과 自由中國에 比해서 數量的인 面에 있어서 그 水準이 매우 높으며 教職員을 위한 專門資料와 補助資料까지 提示하고 있는

26) 中國圖書館基準 : 學校圖書館基準 II. 資料 7. 構成

것이 特徵이다. 日本基準은 藏書規定이 學生數에 比例하는 數量을 細分化되고 있다. 自由中國은 日本과 비슷한 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 每年 藏書增加量에 있어서는 美國은 學生 1人當 1卷, 日本은 0.5卷 이상, 自由中國은 0.5卷 程度의 增加率로 增置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必要에 따라 複本을 備置도록 勸獎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外國에서는 圖書館資料에 관해서도 細部的으로 規定하여 圖書館의 奉仕活動에 活力素가 되는 基底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 圖書館協會에서는 圖書館法施行令改正(案)을 立案하고 있는데 圖書館 藏書에 있어서 “學生1人當 5冊 이상을 確保하도록 하되 이를 超過한 圖書에서는 每年 學生1人當 0.5冊 이상의 新刊圖書를 受入하도록 한다”²⁷⁾라고 規定하는 方向으로 檢討되고 있다. 그런데 非圖書資料의 數量의 規定에 대해서는 아무 言及이 없으니 매우 아쉬운 느낌이다.

學校圖書館의 資料擴充과 奉仕活動을 活潑히 促進시키고 資料센터로서의 機能을 갖추려면 圖書館法施行令이나 圖書館施設·設備基準令이든 간에 國際水準에 뛰 떨어지지 않는 圖書館資料의 種類와 數量을 明確히 規定되어야 할 問題라고 본다.

3) 圖書館 職員에 관한 事項

學校圖書館活動의 根幹이 되는 것은 圖書館資料의 充實과 그 利用에 있지만 圖書館資料를 보다 効果的으로 活用되기 위해서는 資料를 蒐集 整理 運營하는데 參與하는 人的 要素가 매우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圖書館擔當教師의 知識과 技能이 크게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圖書館의 專門的 事務에 從事하는 職員을 司書²⁸⁾, 司書教師²⁹⁾라고 稱하고 있다. 이들은 圖書館資料 및 施設과 더불어 圖書館의 緊要한 三大要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司書, 司書教師가 가장 重要한 要素로 보고 있다. 그것은 圖書館資料의 選擇, 組織 및 利用, 그리고 圖書館의 運營 및 教育的 計劃이 그의 職務에 속한다는 理由에서 뿐만 아니라 教育監(長) 및 校長의 理解, 教師들의 協調, 學生들의 热意도 司書教師가 지니고 있는 圖書館에 대한 見解와 圖書館의 理想을 實際의이며 흘릉한 現實의인 姿態로 만들어 내는 能力 如何에 따라서 크게 左右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⁰⁾

學校圖書館의 職員에 관한 法規內容은 다음과 같다.

27)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施行令改正(案), 1976. p.17.

28)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用語集에서 圖書館學에 관한 一定한 教育과 訓練을 마치고 圖書 및 기타 資料의 整理, 保存, 閱覽에 관한 專門的 事務에 從事하는 圖書館 職員이라고 說明하고 있음.

29) 上揭書에서 教師의 資格과 司書의 資格을 아울러 가진 者로서 圖書館(國民, 中, 高等學校)을 管理 運營하는 圖書館의 職員이라 解釋하고 있음.

30) M.P. Douglas, *The Teacher-Librarian's Handbook*,

“圖書館法第6條(司書職員의 配置) ① 公共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관한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 ② 司書職員 또는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圖書館法第26條(職員)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담당할 職員으로서……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각각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어야 한다.”

이 條文은 專門職으로서의 司書教師의 制度確立과 司書教師資格을 위한 教育 등 두가지를 規定한 것으로 學校圖書館 擔當教師도 專門職으로서의 法的 地位를 確保할 수 있게 되었다는 點에서 劃期的인 措置이다. 또한 모든 學校에는 반드시 司書教師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겠음 義務化시켜 司書教師의 必要性을 認定받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誕生이라 하겠다.

다음은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관한 規定을 살펴 본다. 圖書館 法第6條2項에 明示된 바와같이 “閣令으로 定한다”고 되어 있는데 司書教師의 資格規定은 教育法³¹⁾에 明示되어 있다. 司書教師는 學校教育을 擔當하는 教師라는 概念에서 教育法에 一般教師와 同一한 原則下에서 資格基準을 法制화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 國, 公, 私立의 學校 모두 同法의 適用을 받게 하고 있다. 司書教師의 資格規定은 우리나라 教員資格證制度에 있어 하나의 큰 革新이다. 教育法에 規定된 司書教師資格基準은 다음과 같다.

사 서 교 사 자격 기준

〈교육법 제79조1항의 별표 1〉

사서교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	--

위의 資格基準은 一般教師의 資格을 保有하고 아울러 特殊한 圖書館教育을 踏修하도록 要求하고 있어 司書教師의 專門性을 認定하고 質的向上을 圖謀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나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國民學校와 中等學校의 司書教師 사이의 資格區分이 없다. 즉 司書教師資格證이 있으면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어디든 司書教師가 될 수 있다는 解釋이다.

裏田武夫, 佐藤貢(譯) (東京, 收吉店, 1955) p.5.

31) 教育法第79項1

둘째 司書教師는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여 進級의 機會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點을 들 수 있다. 司書教師는 一般教師보다 高等의 資格基準을 要求하고 있으면서 一般教師가 所定의 司書敎育을 받은 뒤 司書教師로 任命되면 一般教師보다 格下된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게 되는 矛盾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資格은 規定하였지만 司書教師 養成에 있어서 履修과 學點 등에 관한 措置가 講究되어 있지 않다. 圖書館法施行規則³²⁾에는 正司書 準司書의 資格講習에 관한 事項만 規定하고 있다. 日本은 學校圖書館 司書敎諭講習規程³³⁾을 定하여 一定한 水準에서 實施하고 있다. 즉 教師普通免許狀을 所持한 者로서 7科目單位의 圖書館學의 專門敎養科目을 履修하도록 하여 科目과 單位數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美國은 州나 地域(regional)에 따라 資格認定機關에 있어서의 資格부여 條件이 다르나 一般的으로 資格부여 條件을 充分히 滿足시킬 수 있는 大學의 教育機關을 認定하여 그 大學에서 所定의 科目과 單位를 履修하도록 하고 있다.³⁴⁾ 우리나라로도 司書教師講習規定을 定하여 專門職 養成으로서 教育體系를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養成機會를 增大하여 需要에 充足시킬 수 있는 方案이 所望스럽다.

다음은 學校圖書館 司書職員의 配置問題에 관하여 考察해 본다. 앞서본 法第26條에 의하면 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教師를 配置할 수도 있고 또는 一般教師로서 圖書館의 專門的인 知識과 技能이 없어도 擔當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司書教師의 配置를 強制하지 않은 것은 司書教師를 반드시 두도록하면 教師의 增員問題가 따르는 등 教育行政財政上 어려운 問題가 惹起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現實과 妥協한 備置로 보아 앞으로 時期가 오면 司書教師를 반드시 두도록 改正할 餘地가 있는 事項이다. 現在 非專門人에 의해 運營管理되는 學校圖書館에서는 試行錯誤, 活動의 沈滯 등 많은 問題點들이 나타나는 圖書館이 많다. 이러한 現象은 學校圖書館의 發展과 奉仕活動의 正常化를 沮害하는 要因의 하나라고 指摘할 수 있다.

司書教師의 配置基準은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에 規定하고 있는데 이 條文은 다음과 같다.

“法施行令 第6條 ① 法第6條第1項 및 26第條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 學校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司書職員,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1. 國民學校에는 1人 이상의 司書教師나 1人 이상의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32) 1966年 3月 23日, 文教部令 第172號

33) 1952年 8月 6日, 日本文部省令 第21號

34) 深川恒喜 등編, 學校圖書館事典, 東京, 第一法規出版社, 1965. p.350.

2.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人 이하인 때에는 1人の 司書教師나 1人の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人을 超過할 때에는 2人の 司教書教師나 2人の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教師를 둔다.”

이 條項은 司書教師나 司書 擔當教師의 義務的 配置에 대한 法規制力を 明示하고 數的表現까지 具體化하였는데 意義가 있다. 여기에 外國의 學校圖書館 基準과 比較 檢討해 본다.

사서교사 및 사무직원 배치기준

구 분	미 국	일 본
사서교사	① 학생수 900人까지는……학생수 300人마다 사서교사 1人 ② 학생수 900人을 초과할 때……학생수 400人마다 사서교사 1人	① 학생수 450人 이하일 때……겸임사서교사 1人 ② 학생수 450人을 초과할 때……전임사서교사 1人
	① 학생수 600人마다 1人	① 학생수 900人 이하일 때는 1人 ② 학생수 1,800人 이하일 때는 2人 ③ 학생수 1,800人을 초과할 때 3人
사무직원		

資料： 미국은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이상에서 比較해 보면 우리나라의 數的基準은 外國에 比해 合理的 根據가 희박함을 느낀다. 더구나 國民學校의 1人 이상의 司書教師나 1人 이상의 司書의 職務 담당 教師를 둔다는 規定은 매우 暫昧하다. 1人 이상이면 2人·3人도 可能하다는 말인데 그 區分과 限界의 明示가 없다. 이런 點도 學校 規模에 따라 限界點을 明確히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外國의 경우는 司書教師를 補助하는 事務職員까지 配置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事務職員에 대해서는 言及이 없다. 事務職員은 司書教師의 大量은 業務量을 効果的으로 補助해 주는 役割 뿐만 아니라 司書教師가 授業 등으로 出他中, 全日開館을 위해 圖書館의 奉仕活動을 代役해야 할 必要한 人力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事務職員의 配置問題를 考慮할 對象이라 본다. 法에 定해진 이 配置基準의 實質的인 効力은 專任司書教師의 配置를 目標로 하는 年次的인 司書教師의 國家的 養成計劃에 의한 教育實施와 司書教師 定員을 점진적으로 增大시켜야만이 條項의 實効性을 겸을 수 있고, 또한 圖書館 發展에 크게 影響을 줄 것이다. 그런데 實現的으로 緊急한 일은 現在 圖書館教育을 받지 않은 學校圖書館 擔當教師들의 圖書館教育의 實施問題이다. 어찌한 다른 諸科學의 教養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圖書館員이 될 수는 없다. 圖書館에서는 獨自의 分野가 있어 이의 知識

과 技術의 訓練과 教育을 받지 않으면 專門性 있는 職務遂行이 어려우며, 또한 圖書館機能의 發展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學校教育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充分한 技能과 熱意를 가져 學校圖書館의 運營을 專擔할 수 있는 司書教師의 存在가 必須條件이다.³⁵⁾

4) 學校圖書館 施設에 관한 事項

學校圖書館 施設이란 圖書館資料를 保存하고 學生 및 教師들이 資料를 利用하는 所必要한 場所와 設備를 말한다. 이는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基本要素로서 奉仕活動을 能率的이고 効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그 施設을 바람직하게 組織하여야 한다.

學校圖書館은 學校의 基本施設이기 때문에 學校마다 크고 작은 形態로 施設을 갖추고 있으나 그 建物(室)이나 備品 등 附帶施設들의 缺陷 때문에 學校圖書館 本來의 使命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³⁶⁾ 日本도 戰後 많은 學校圖書館이 設立됨에 따라 여러 種類의 備品이 設計되고 整備되어 왔지만 훌륭하게 갖추어진 것은 많은 것 같지 않다.³⁷⁾ 그러나 日本은 設計의 標準化問題에서 오는 結果를 보아진다.

우리나라는 學校圖書館 施設을 滿足하게 設備할 수 있는 財政的 補助가 保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學校圖書館施設을 學校規模에 따라 一定基準을 確保하기 위한 法規의 規制力도 貧弱하다. 또한 現行 施設規定은 不合理한 點을 內包하고 있고 國際水準에도 뒤 떨어진 內容이다. 學校圖書館의 施設에 관한 法規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圖書館法 第25條2項에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한다”고 하였고 同法 施行令에는 “學校圖書館의 施設 基準은 따로 各級 學校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³⁸⁾고 하여 「學校施設·設備基準」에 明示하였다. 즉 第5條(校舍) 1項에 校舍 안

〈別表 3〉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신설 73.9.18 대령 6854)

구 분	열 랑 좌 석 수
국민학교	보통교실 겸용
중 학 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35) 日本文部省, 學校圖書館의 管理와 運用, 東京, 東洋出版社, 1962. p.25.

36) 韓國圖書館協會編學校, 圖書館 施設, 서울, 同協會, 1965. p.3.

37) 神野清秀, 竹内惣, 圖書館의 家具와 用品,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3. p.19.

38) 圖書館法施行令 第2條2項

에 갖추어야 할 最少限의 施設 設備로서 9種을 들고 있으며, 그 가운데 「圖書室」을 두어야 한다는 規定이 있고, 同條 6項에 “圖書室의 閱覽座席數……別表3과 같이 한다”고 明示하였다.

한편 「圖書室」의 設備種目은 「學校校具 設備에 관한 規則」³⁹⁾에서 规定하고 있는 데 그 條文과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3條(校舍設備의 種目과 基準)

- ① 幼稚園·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圖書室 및 養護室에 備置하여야 할 設備의 種目은 別表4와 같다.
- ② 第1項의 校舍設備의 種目別 所要基準은 各室에 收容되는 學生이 同時に 學習하거나 또는 利用하는데 支障이 없는 數量이어야 한다.

〈別表 4〉 圖書室設備種目(圖書室關係반 拔萃)

구 분	설 비 의 종 목
도 서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열람용 책상과 철상 ○ 도서 목록 카이드함 ○ 서가, 카운터 ○ 기타 도서실에 필요한 설비

(주)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준하는 각종 학교에는……

도서실의 설비의 종목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圖書館法에는 “學校圖書館의 施設基準은 따로 闕令으로 定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法施行令에서는 “施設基準은 따로 學校의 施設基準令에 의한다”고 하여 「學校施設·設備基準令」으로 移管되었다. 이렇게 된 理由를當時의 文教部 社會教育課長은 “基準(案)에서 规定한 學校圖書館 施設基準⁴⁰⁾이 現實情과는 差異가 크다는 것, 또 學校에 관한 施設基準은 各級 學校 施設基準에 一括 包含시켜 學校經營者가 수시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圖書館을 위하여 보다 效果的이라는 論議가 있어 結論을 얻지 못하고 그 후 數三次의 會議를 거듭한 끝에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을 再調整하여 앞으로 制定하게 되는 各級 學校 施設基準令에 包含시키기로 合意되어 通過를 보았다.⁴¹⁾ 이러한 理由에서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은 法施行令에서 規制되지 않고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 包含되었는데 이 基準令에는 施設名稱을 「圖書館」이라고 明示하여 圖書館法 第25條의 「圖書室 또는 圖書館」, 法

39) 1977年 5月 30日, 文教部令 第408號

40) 韓國圖書館協會에서 文教部에 提出한 圖書館法施行令에 規制된 各級 學校圖書, 施設基準(案)

41) 金京一, 學校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서술,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71. p.48.에서 再引用

施行令 第2條의 「學校圖書館」이라고 表現한 것 보다 오히려 弱하게 反映되었다. 用語의 意味를 國語辭典⁴²⁾에서 보면 「圖書館」은 “온갖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모아두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된 시설”이라고 풀이 하고 있고, 「圖書室」은 도서를 모아두거나 또는 볼 수 있게 차려 놓은 방”이라 解釋하고 있다. 따라서 「방」은 「집안에 마련된 간」을, 「시설」은 「배풀어 차린 설비」를 뜻하는바 「施設」은 「방」을 包含한 建物까지를; 「방」은 建物 내의 한 부분을 뜻하고 있어 「圖書室」이라는 明示는 現實情狀을 堪案한 表現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發展的인 用語使用이 아쉽다.

外國의 學校圖書館 施設基準과 比較하면서 우리나라의 施設基準을 考察해 본다.
重要한 것만 추려 보면,

(1) 美國(A.A.S.L.,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1960)

- ① 學生數 200~550人일 때 最少로 45~55座席
- ② 學生數 551人 이상일 때는 學生數의 10%의 座席
- ③ 教師를 위해서 學校圖書館의 한 部分으로서 獨立된 방 또는 學校의 다른 방
- ④ 補助資料를 두기 위하여 獨立된 방
- ⑤ 1個 열람실의 座席數는 100席 이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80席 이하가 바람직하다.

(2) 日本(學校圖書館基準)

- ① 在籍學生數의 10%의 人員을 收容할 수 있는 열람실(面積은 收容人員 1人當 2.18m²가 必要함)
- ② 最低로 한 學級의 學生數를 收容할 수 있는 間이
- ③ 閱覽室 이외에 事務室, 研究室을 두고 여유가 있을 때는 시청각실을 둔다.
- ④ 學校圖書館은 專用施設로서 教育活動에 便利한 場所

(3) 自由中國(學校圖書館基準)

- ① 在籍學生 10%를 基準으로 하여 最低限, 最大學級 學生數에 20人을 追加한 收容量
- ② 閱覽室 面積은 每 閱覽席 面積을 2m²로 計算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 (1) 外國의 경우는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은 學校全體施設基準에 包含시키지 않고 別途 獨立된 基準으로 規定하고 있다.
- (2) 위의 外國基準은 重要한 項目만 추려 보았지만 그 內容은 圖書館의 位置, 建

42) 申琦澈, 申琦澈, 標準國語辭典, 서울, 乙酉文化社, 1958. p.366.

築에 留意事項(採光, 防音 등)까지 明示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基準에는 閱覽座席數만 規定하고 있다. 이는 學校全體施設, 設備基準에 包含시켰기 때문에 制約을 받는 것 같다.

(3) 外國은 閱覽座席數를 在籍學生數의 10%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國民學校의 경우는 「普通教室 兼用」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學校施設, 設備基準令에는 “校舍는 學習과 保健衛生에 適合한 것으로서……”⁴³⁾라는前提 條項이 있는데 圖書館(室)을 普通教室 兼用으로 使用할 경우 圖書館機能發揮를 正常化하는데나 學級의 授業活動이나 모두 支障있기 마련이고 그 効用性이 減少된다는 것은 明白하다. 따라서前提條項 “學習에 適合한 것”的 精神에 違背되는 規定이다. 學校의 基本的 施設로서의 學校圖書館은 奉仕機關과 教育機關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前者는 教育活動을 支援하는 資料의 供給源으로서 活動하는 것이며 後者는 그 自體가 直接 教育의 場으로서 일하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圖書館(室)이 다른 用途에 兼用된다면 教育的으로 支障이 많으므로 學校는 專用圖書館을 갖추는 方向으로 規制되어야 한다. 또 中學校, 高等學校는 각각 1學級當 3席, 5席의 閱覽座席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學校마다 20席 이상이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 數量的 基準根據는 合理的 妥當性이 稀薄하다고 보아진다. 學校圖書館(室)은 最低한 學級學生이 同時に 學習의 場으로 活用할 수 있어야 하는데 學校의 規模에 關係 없이 20席을 最低線으로 規制한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

다음은 學校圖書館의 備品에 관한 規定을 본다. 「學校校具設備에 관한 規則」에서 圖書館(室)의 設備種目을 規定하고 있는데 너무나 疎忽히 取扱된 感이 있다. 表示된 種目은 ① 圖書閱覽用 책상과 결상 ② 圖書目錄 카아드函 ③ 書架·카운터 ④ 기타 圖書室에 必要한 設備 등 4個項目 뿐이다. 이 設備種目은 圖書館에 備置하여야 할 必須基本設備라 하지만 學校規模에 따르는 數量的 基準의 明示가 없다. 하나의 基準을 나타내는 規定이라면 數量的 表示가 있어야 그 規定의 意義가 있고 實効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外國의 경우는 學校圖書館 施設基準에 작은 設備種目까지도 學校規模에 따라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施設·設備基準」은 國際水準에 뒤 떨어진 貧弱한 點을 보이고 있다. 또한 合理性의 缺如된 點이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것이 學校圖書館의 育成發展과 學校教育의 向上을 遲延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現實

43)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第5條1項(圖書室도 包含됨)

44) 日本圖書館教育研究會編, 前揭書, p.9.

情에 비추어 國際水準에 接近된 施設·設備規定을 한다면 이에 所要되는 財政的인 負擔이 크기 때문에 現實을 考慮한 남아지 이렇게 된 것으로 理解를 하나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한다”는 圖書館法의 目的이 設定된 이상, 學校圖書館의 施設·設備規定도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는 方向으로 規制力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長期的인 眼目에서 水準級의 具體的인 施設·設備規定을 定하고 이에 年次的 段階的으로 擴充設備해 가는 方案이 設定되면 그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이는 學校圖書館施設의 充實을 期하고 圖書館 發展을 促進시키는 誘導的 裝置가 될 것이다. 現行 規定으로는 施設을 더 擴充할 수 있는 能力 있는 學校도 이에 疎忽히 하는 增遇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結　　言

이상에서 考察한 바와같이 法은 現在의 學校圖書館이 當面한 隘路點들을 滿足하게 解決하여 주지 못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國家의 政策的 對象에서 疎外되었던 圖書館이 그 地位가 認定되어 法制化되고 國家的인 行政對象으로 된 것은 確實히 劇期的인 措置라 할 수 있으며 韓國圖書館의 發展基盤을 構築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劇期的인 措置와 發展基盤이 갖는 強度는 너무 現實 與件을 考慮한 남아지, 劇期的인 學校圖書館 發展의 契機가 될 素地를 다듬어 주는데는 度數가 낮았다. 물론 現實 與件이 如意치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지나 法이 制定公布되고 圖書館法의 目的하는 바를 뚜렷이 밝히고 있는 이상 法의 經過를 圓滑히 하고 法의 効力を 거두기 하기 위하여 圖書館行政의 國家的 對象이 強力하여야 함은 물론 關係法規의 規制力도 圖書館法의 目的을 充足할 수 있게 規定되어야 했었다. 現行 圖書館關係法規로서는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는데 貧弱하여 國民의 教育과 文化的 發展에 寄與하는데도 힘의 發揮가 弱하다.

近代國家의 制定法은 衆知를 모아 慎重한 節次를 거쳐 形成된다. 그러나 成文法인 즉, 有限性과 固定性에 缺陷이 생기는 것을 免할 수가 없고 또한 人間의 共同社會의 生活關係가 複雜하고 流動的인 것을 完全無缺하게 規律한다는 것도 期待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바램은 보다 學校圖書館의 育成發展에 크게 도움이 되고 圖書館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強制力과 支援 등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法의 規制力이 理想的 標本을 提示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現在와 未來에 걸쳐

法이 目的하는 最大公約數를 提示해 주었으면 하는 希望이다.

앞에서도 指摘했지만 圖書館法에서의 學校圖書館에 관한 條項이나 이에 關聯된 法規들이 圖書館政策의 基本的條件 즉 「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奉仕를 充分히 可能케 하는 것」에 대한 發展的인 法措置로서는 不足한 點이 있다. 學校 圖書館의 目的과 機能이 學校教育에 미치고 影響이 크기 때문에 政策的 貧困으로 因해서 學校 圖書館의 成長을 阻止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學校教育 發展을 遲延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기 때문이다. 學校圖書館의 올바른 成長을 助長시키며 그 發展을 促求하려면 政策的이고 計劃的인 行政要素가 隨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學校圖書館 關係法規도 바람직한 發展的 改編이 있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書 簄〉

1. 教大圖書館研究會編, *학교도서관*, 서울, 學文社, 1969.
2. 教育大學圖書館學研究會編, *학교도서관개론*, 서울, 一潮閣, 1969.
3. 金京一, *학교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學校圖書館叢書 1)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71.
4. 法制處編, *대한민국현행법령집*, ⑩ 教育, 學術, 서울, 法制處.
5. 申旼澈, 申旼澈, *표준국어사전*, 서울, 乙酉文化社, 1958.
6. 李喆珪, *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7. 張一世, *학교도서관 운영지침*, 서울, 新書閣, 1962.
8. 韓國圖書館協會編, *학교도서관시설*, 서울, 同協會, 1965.
9. 韓國圖書館協會編, *도서관법시행령개정(案)*, 서울, 同協會, 1976.
10. 韓國圖書館協會編, *도서관실무편람*, 서울, 同協會, 1966.
11. 韓國圖書館協會編, *도서관용어집*, 서울, 同協會, 1966.
12. 神野清秀, 竹内惣, *도서관의 가구와 용품*, 東京, 日本圖書館, 1973.
13. 日本圖書館教育研究會編, *학교도서관자료의 선택*, 東京, 學藝圖書, 1955.
14. 日本文部省, *학교도서관의 관리와 운용*, 東京, 東洋出版社, 1962.
15. 深川恒喜 等編, *학교도서관사전*, 東京, 第一法規出版社, 1965.
16. A.A.S.L.,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日本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海外資料委員會 譯, 東京, 全國學校圖書館協議會, 1965.
17. Douglas, M.P. *The Teacher-Librarian's Handbook*, 萩田武夫, 佐藤貢譯, 東京, 牧書店 1965.
18. Dewey, J. *The School and Society*, Rev.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3.

〈論 文〉

1. 金斗弘, *學校圖書館行政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도립월보*, Vol.9. No.2, 1970.
2. 金鍾皓, *學校圖書館과 教育方法의 改善*, *도립월보*, Vol.5. No.3, 1964.
3. 千惠鳳譯, *中國圖書館基準*, *도립월보*, Vol.9. No.8, 1968.
4. 玄圭燮, *圖書館法과 同施行令의 定向點*, *도립월보*, Vol.6. No.7, 1965.